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13
----------	-----------

제출연월일	2011. 02. 2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입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0. 11.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거창군과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협의기구로서 설치하는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마.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절차와 조건등의 부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전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둠(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4, 제8조, 제13조의3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제6조의4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예산확보 내역 기술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2. 31. ~ 2011. 01. 2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7. 그 밖에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상생발전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지역 내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4. 지역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는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⑧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5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에 부적절하거나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일 경우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까지 효력을 가진다.